H - 163 - 2021

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김숙영

: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장세진

○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새롬

○ 개정자 :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정원

- 제·개정 경과
- 2014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1년 08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H-34-2011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
- 이새롬 등, 감정노동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, 위험요인 및 건강영향조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5.
-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 평가도구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연구,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
-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, 산업안전보건공단 2019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의 의무)
-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

#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의 의무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),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,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고객응대"라 함은 주로 고객, 환자,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)
  - (나) "감정노동(Emotional labor)"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, 말투나 표정,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하여,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,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.
  - (다) '측정도구'라 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외부 연구진과 공동 개발하여 표준화한 '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'를 말한다.

H - 163 - 2021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

#### 4.1. 감정노동의 구성요소

- (1) 감정노동의 빈도: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하는 횟수를 말한다. 횟수가 많을수록 근로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.
- (2) 감정노동의 주의성: 감정표현의 기간과 강도를 말한다. 감정노동을 오랜 기간, 높은 강도로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.
- (3) 감정표현의 다양성: 상황에 맞추어 감정을 자주 바꾸어야하는 것은 더 많은 계획과 예측이 필요해 근로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.
- (4) 감정 부조화 :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이 충돌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진이 발생하고 직무만족도 가 감소한다.

#### 4.2. 감정노동의 건강영향

- (1)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근로자들은 감정의 부조화로 우울, 적응장애, 정신적 탈 진상태에 빠질 수 있고, 신체적으로도 고혈압,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.
- (2) 또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져 기업차원에서는 생산성이 감소하고 결국 근로자 이직의 원인이 된다.

KOSHA GUIDE H - 163 - 2021

#### 5. 감정노동 평가

개별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하여는 <부록 1>과 <부록 2>를 참조하여, 직종별, 계층별, 연령별로 고위험 집단을 파악한다. 평가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시행할 수 있으며, 관리상 필요시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나 사업주가 지정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담당한다.

#### 5.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(K\_ELS®11) <부록 1>

#### (1) 측정 항목

- (가) 기존의 K-ELS를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(K\_ELS®11) 개정. 감정노동평가도구(K\_ELS®11)는 '감정규제(emotional regulation)'(2문항), '감정부조화(emotional dissonance)'(3문항), '조직모니터링(organizational monitoring)'(2문항), 그리고 '감정노동 보호체계organizational protective system for emotional labor)'(4문항) 등 총 4개 하위 영역의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. 모든 문항은 1-2-3-4 리커트 척도로 일부문항은 4-3-2-1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였다.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노출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
- (나) '감정규제'는 고객 응대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감정조절에 대한 노력이 수 반되는가의 정도와 감정표출의 이중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규제 등의 수준을 평가한다.
- (다) '감정부조화'는 고객 응대과정에서 고객과의 갈등이나 재량권의 부재로 인해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 는 등의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한다.
- (라) '조직모니터링'은 근로자들이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인사고과나 평가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다.
- (마) '감정노동 보호체계'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, 조직차원의 관리 방안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의 정도와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

H - 163 - 2021

는 직장 내 지지체계의 수준을 평가한다.

#### (2) 점수 산정 방식

각 영역별로 단순 합산하여 점수화하여 사용한다.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, 감정노동 직장폭력의 노출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

#### (3) 성별 참고치<부록 2>

한국형 감정노동종사자 직무환경평가 도구의 고위험군 판정을 위한 참고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. 직무스트레스 감정노 동 및 직장폭력의 노출과 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보이므로 성별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.

#### 5.2 결과해석의 유의점

- (1) 감정노동의 영역별 환산점수는 <부록 2>에 제시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의 요인별 성별 참고치와 비교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다. 제시된 참고 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. 하지만, 평가대상이 된 집단의 평균점수가 주의에 해당한다면, 해당 감정노동 요인이 해당 집단에서의 주요한 문제로서 개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심리적 문제나 생산성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.
- (2) 감정노동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나 업무성과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감정노동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감정노동의 강도나 빈도를 줄여주거나소속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

※ 감정노동 실패파악 이후, 필요한 관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(KOSHA GUIDE H -34-2011)과.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(산업안전보건공단, 2019) 등을

H - 163 - 2021

참고할 수 있다. 특히,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의 주요 위험요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, 감정노동 업무 수행실태 파악 양식 등을 참고 할 수 있다. KOSHA GUIDE H - 163 - 2021

## <부록 1>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(K-ELS®11)

\* 다음의 설문은 귀하의 감정노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현재의 업무수행 상황을 토대로 아래의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설 문 내 용	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감정규제	1. 고객을 대할 때 회사의 지침이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	1	2	3	4
	2. 업무상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숨긴다	1	2	3	4
감정부조화	3. 나의 능력이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.	1	2	3	4
	4.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감정도 함께 팔고 있다고 느껴진다	1	2	3	4
	5.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다	1	2	3	4
조직 모니터링	6.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고객에게 잘 응대하는 지 감시를 당한다(CCTV 등)	1	2	3	4
	7. 고객응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,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	1	2	3	4
감정노동 보호체계	8.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있다	4	3	2	1
	9. 직장 내에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 악성 고 객 응대 등)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	4	3	2	1
	10. 고객응대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은 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	4	3	2	1
	11.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나 자율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.	4	3	2	1

KOSHA GUIDE H - 163 - 2021

# <부록 2>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(K-ELS®11)의 성별 참고치

		정상	위험
감정규제	남자	2~5	6~8
성 개세	여자	2~6	7~8
감정부조화	남자	3~6	7~12
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여자	3~7	8~12
조직모니터링	남자	2~4	5~8
조석도니터당	여자	2~5	6~8
가정1.도 비중케게	남자	4~8	9~16
감정노동 보호체계	여자	4~8	9~16

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1. 09. 16.

○ 개정자 :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정원

○ 개정사유 : 감정노동 평가에 있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반영

○ 주요 개정내용

- 평가지침이 아닌 관리관련 내용 삭제.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정 내용 추가

- 감정노동 평가지침을 기존 KOSS, K-ELS, K-WVS 에서 K\_ELS®11, 로 변경함